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원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전화 취재에 응한 것만으로 자신의 초상 공표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6.자 판결(2007가단40534)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박○○(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2006. 7. 3.과 2007. 1. 3.에 <뉴스데스크>를 통해 내보낸 자신의 신변 관련 보도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방송사는 위 두 방송을 통해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결혼정보업체 대표 유모씨와 사귀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유모씨가 차량에 불을 질러 원고가 전신화상을 입었으며, 그 이후 다시 동거를 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법원은 “해당 방송이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프로필 사진을 방송함으로써 당사자가 원고임이 특정되었다”고 지적한 뒤 “방송이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나간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판결문

사 건 : 2007가단40534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 ○
 피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2008. 3. 5.
 판 결 선 고 : 2008. 3. 26.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던 여성이고,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MBC 방송국을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년경 자신이 근무하는 결혼정보업체 대표이던 유모씨와 교제 중 교제 지속여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위 유모씨가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그로 인해 원고가 전신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유모씨가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여 2006. 6.경까지 동거해 왔으나 이후 위 유모씨의 폭행이 반복되자 위 유모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다. (1) 피고 회사는 2006. 7. 3. 21:00경에 시작하는 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 를 통해 원고 관련 사건을 방송하였는데, 원고와 위 유모씨를 서울의 한 결혼정보업체 대표인 35세 유모씨와 그 회사의 직원인 동거녀 36살 박모씨라 소개하면서 위 회사 홈페이지 및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영하였고, 위 수사기록에 첨부된 원고의 화상부위 사진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원고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변조하여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방송이라 한다). 한편, 위 사건을 취재한 피고 회사 기자는 원고와 전화통화 내용을 원고의 동의 없이 녹취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방송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06. 8. 23. 피고 회사의 사건 재연 프로그램인 “현장기록 형사” 「잔인한 동거남」편을 통하여 원고 관련 사건을 방송하였는데, 원고 촬영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인터뷰 내용은 음성변조하여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방송이라 한다).

(3) 피고 회사는 2007. 1. 3. 위 뉴스데스크에서 “데이트 폭력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성교제 중에 발생하는 폭력문제를 방송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 이 사건 제2 방송을 위하여 원고와 인터뷰한 내용 및 원고 화상부위 촬영사진 등을 원고의 승낙 없이 삽입하

여 방송하였는데, 원고를 33세 송모씨로 소개하였고 원고의 음성변조된 인터뷰와 함께 원고가 기자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왼쪽 팔, 다리 화상부위를 보여주는 상황을 뒷모습으로 찍은 장면과 원고의 왼쪽 팔, 다리, 허리 화상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였고,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약 33초간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방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 3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방송의 경우 원고가 명시적으로 방송보도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취재에 응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제3 방송의 경우 원고가 방송보도에 동의한 이 사건 제2 방송의 예상가능한 통상적인 이용범위 내에 속한다.

(2) 이 사건 제1 방송의 경우 원고가 근무하는 결혼정보회사의 홈페이지 화면 방영 시간이 약 7초에 불과하고 홈페이지나 프로필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시청자들로서는 특정 결혼정보회사의 홈페이지임을 인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고, 화면속의 사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제3 방송의 경우 방송내용과 방법상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방송은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폐해 등을 시청자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보도된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1)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가 포함된다.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내용은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학교 졸업앨범의 사진을 허락없이 결혼준개소에서 중매의뢰인 사진첩에 포함시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등),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초상이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신체의 일부만을 촬영하여 그 사진이 누구에 대한 사진인가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사람의 뒷모습 사진과 같이 얼굴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피촬영자의 고유한 특징, 사진에 대한 설명 등 관계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그것이 누구의 사진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피해자 특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방송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홈페이지와 프로필 사진을 방영함으로써 원고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이 사건 제1 방송을 접하고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3 방송은 신체의 뒷모습과 화상부위 등 신체 일부만을 촬영, 방영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2회에 걸쳐 원고 관련 보도가 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이 사건 제3 방송을 접하고 원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동의여부

(1)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으로서 본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 자체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진이 촬영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즈를 잡은 경우에는 사진의 촬영 및 그 사진에 대한 통상의 방법에 의한 공표를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3 방송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 등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방송 전에 피고 회사 기자의 전화 인터뷰에 답을 하였고, 이 사건 제2 방송을 함에 있어 일정한 조건하에 사진촬영 및 공표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방송에 원고의 사진 등이 공표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3 방송을 통하여 원고의 화상부위 사진 등이 공표될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1) 사람의 초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그중에서도 보도의 자유와 관련된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초상이 방영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결국 보도를 위한 초상권의 침해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는 그 초상권 보호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초상의 촬영 및 공표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위 보도목적에 비추어 필요성과 상당성을 가지는 때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방송은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위 방송 목적상 원고 회사 홈페이지 및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방영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3 방송은 방영된 원고의 추상부위가 미혼 여성인 원고로서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아니한 부끄러운 부분임에도 피고 회사가 방송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방송 목적상 원고의 추상부위까지 방영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구비하였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3 방송을 함으로써 이를 시청한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쉽게 원고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이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3 방송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제1, 3 방송이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제1, 3 방송의 방법, 방송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 2

수차례에 걸친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론보도 요구문의 내용이 유사하다면 게재 횟수와 동일하게 반론문이 게재될 필요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2008카기2967)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정청래(전 국회의원, 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

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가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기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 한

초등학교의 행사장에서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퍼부었으며,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피고가 4차례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4건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반론보도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반론보도가 반드시 당해 기사의 게재 횟수와 동일하게 게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반론보도청구 내용 중 보도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피고 언론사는 한 차례 반론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8카기2967 반론보도

신 청 인 : 정 청 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김문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변 론 종 결 : 2008. 7. 16.

판 결 선 고 : 2008. 8.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게재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안에 위 반론보도문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위 의무이행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35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3반론보도 요구문을, 그 반론보도 게재일 이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0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4반론보도 요구문을 각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체로, 본문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각 게재하라. 만일 피신청인이 위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하나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위 각 반론보도 요구문 게재의무일부터 각 이행완료일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각 3,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2008. 4. 5.자 A11면에 별지 제1기사를, 2008. 4. 7.자 A35면 사설에 별지 제2기사를, 같은 날 A10면에 별지 제3기사를, 2008. 4. 9. A10면에 별지 제4기사를 각 게재하였다. 위 각 기사들의 주요한 내용은 ‘신청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마포구 소재 서교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의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 제1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 각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초등학교 행사장에서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과를 강요한 바 없고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 각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 요구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의 일반론

(1) 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함으로써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 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심판절차에서도 이러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및 제한에 대한 법률의 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5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상당한 이익이 없는 때, ②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④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라고 규정하면서 제16조 제3항에서는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반론보도에 준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반론보도의무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는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일선학교의 교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사과를 강요하였다는 등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응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기사에서 신청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보도된 당사자인 ○○초등학교 교감 ○○○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신청인이 “교감이 건방지게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건방지고 거만하다”, “바지에 손 넣고 있는 것도 거만하고, 작년에도 나만 홀대하고 안 부르고 올해도 안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문 중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부분, 즉 신청인이 “교감과 교장을 모두 자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 신청인이 자신을 찾아온 서교초등학교 교장에게 ‘김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바 없다는 부분, 신청인이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없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소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부분들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들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론보도문의 내용 및 게재횟수 등의 변경

언론중재법 제27조 제3항은 “법원이 반론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라고 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비록 피신청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청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반론보도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반론보도가 반드시 당해 기사의 게재횟수와 동일한 횟수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는 점, 신청인이 4회에 걸쳐 게재를 요구하는 반론보도 요구문이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지면편집사정을 고려할 때 유사한 반론보도문을 4회나 게재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신청인으로서 이후 정정보도청구를 통해 다시 명예회복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기재 각 반론보도 요구문을 종합하여 별지 반론보도문과 같이 고쳐서 게재하고 그 게재횟수, 게재지면, 게재시기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반론보도문〉

우리 신문은 2008. 4. 5.부터 2008. 4. 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정청래 전 국회의원(당시 통합민주당·서울 마포출)이 선거운동기간 중 마포구 소재 S초등학

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김 모 교감에게 '교장, 교감 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바 없고, 사과를 위해 방문한 위 학교 교장에게 '김 모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김 모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후 위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단체를 통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초등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다"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끝.

〈별지1~4〉

제1~제4반론보도 요구문 생략 - 편집자 주

